

서울남부지방법원 2022. 12. 15 선고 2022가단266656 판결 [사해행위취소]

전 문

원 고 A 주식회사

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해마루

담당변호사 최건

피 고 1. B

2. C(개명 전: D)

변 론 종 결 2022. 12. 1.

판 결 선 고 2022. 12. 15.

주 문

1. 가. E(F생)와 피고 B 사이에 별지 목록 순번 1 기재 보험에 관하여 2019. 1. 16. 체결된 보험계약자 변경에 관한 계약을 12,685,680원의 한도 내에서 취소한다.

나. 피고 B는 원고에게 12,685,68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판결확정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%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.

2. 가. E(F생)와 피고 C 사이에 별지 목록 순번 2 기재 보험에 관하여 2018. 12. 20. 체결된 보험계약자 변경에 관한 계약을 2,656,746원의 한도 내에서 취소한다.

나. 피고 C는 원고에게 2,656,746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판결확정일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%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.

3.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.

N

청 구 취 지

주문과 같다.

이 유

1. 청구의 표시 :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.
2.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(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)

판사 성창호

별지